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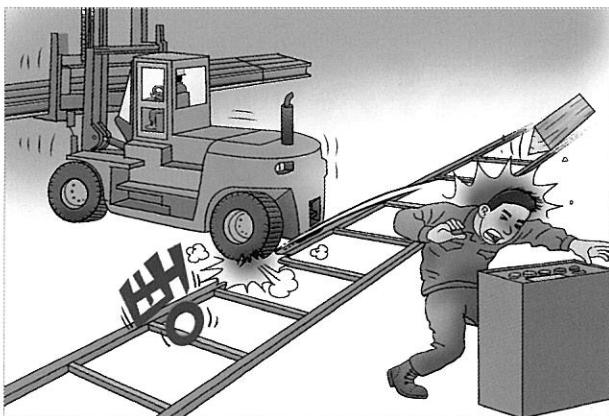


지게차 타이어 파손에 의한 비래

| | | | | | | |
|-----|-----------|------|--------|-------|----|-------|
| 업종 | 선박구성부품 제조 | 가해 물 | 받침목 | 피해 정도 | 인적 | 사망 1명 |
| 생산품 | BLT, 앵글 | 재해유형 | 비래, 충돌 | 물적 | | 50만 원 |

1. 재해개요

지게차운전자(원청)가 수동용접라인 A/S현장에서 10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T-Bar를 출고적치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T-Bar를 포크로 상승시킨 후 후진하는 중 레일정반 끝단부에 뒤쪽 타이어 측면부가 접촉되는 순간 평 하는 소리와 함께 레일 건너편 피해자(협력사)의 머리로 받침목이 비래하여 현장에서 사망함.



2. 재해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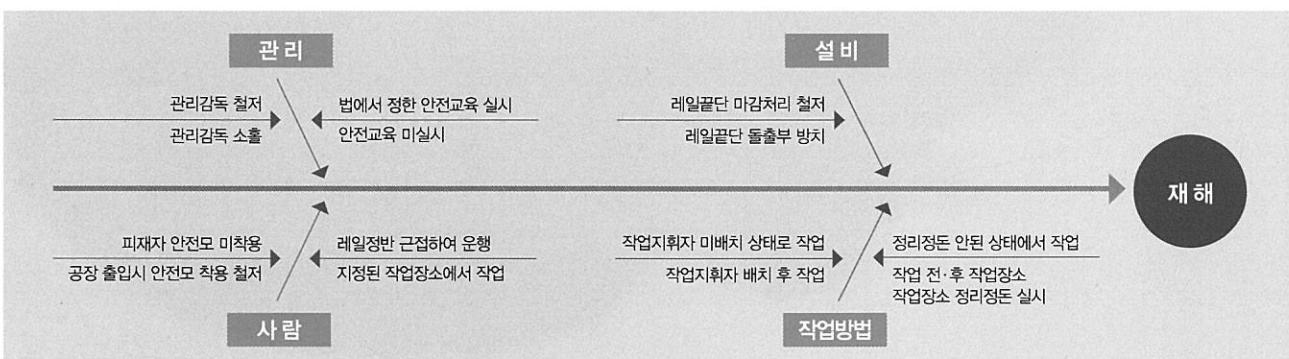
- ① 지게차 운전 부주의
- ② 피해자 안전모 미착용
- ③ 레일정반 근접하여 작업
- ④ 작업지휘자 미배치
- ⑤ 레일정반 주변 받침목 방치
- ⑥ 레일끝단 돌출부 노출
- ⑦ 안전교육 미실시

3. 예방대책

- ① 지게차 운행, 작업 시 주변환경에 주의 및 작업지휘자 배치
- ② 작업장 내 안전모 착용
- ③ 지게차 지정된 통로 및 작업장소에서 운행
- ④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실시
- ⑤ 레일끝단 돌출부 없도록 마감처리 실시
- ⑥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실시

4. 법 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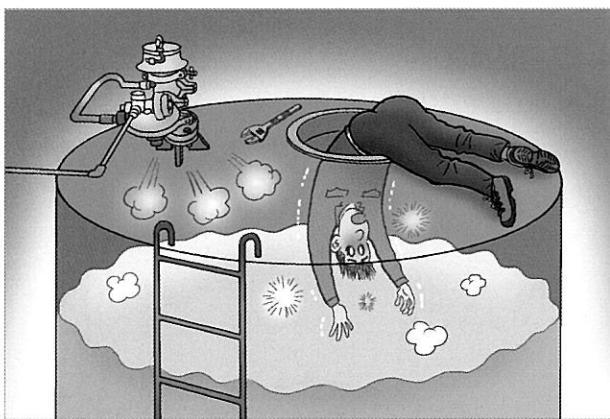


물탱크 상부 점검 중 질식

| | | | | | | |
|-----|---------|------|------|------|----|-------|
| 업종 | 전자제품제조 | 가해물 | 질소가스 | 피해정도 | 인적 | 사망 1명 |
| 생산품 | 반도체칩웨이퍼 | 재해유형 | 질식 | 물적 | — | — |

1. 재해개요

피해자는 업무시간 중 웨이퍼 세척작업장에서 세척용 순수에 기포가 발생된다는 연락을 받은 후 당일 당직시간(21시경 추정)에 직경 2.5m, 높이 3m의 순수탱크에 혼자 올라가 점검구(직경 : 0.5m)의 볼트를 풀고 랜턴으로 탱크내부를 살피던 중 탱크상단 내부에 공급되는 순도 99.999%의 질소에 의해 산소 결핍으로 사망해 있는 것을 다음날 오전 11시경 동료가 발견함.



2. 재해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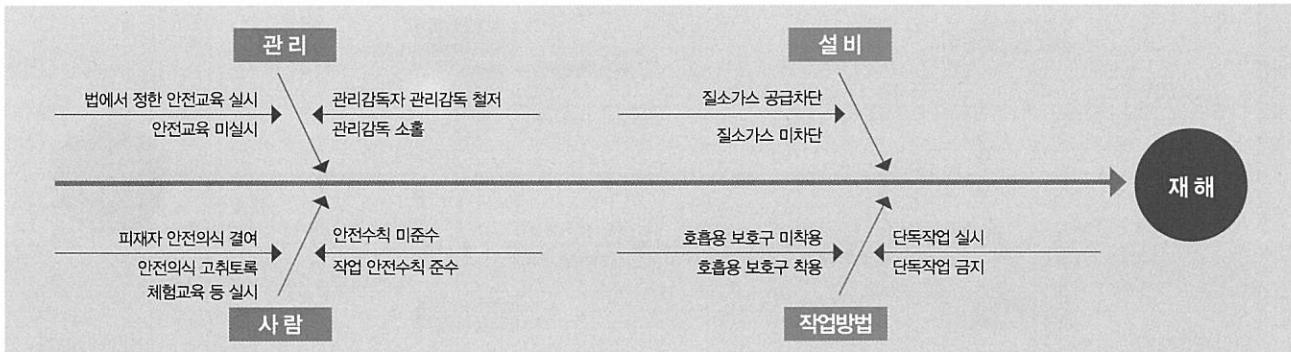
- ① 보호구 미착용
- ② 질소가스 미차단
- ③ 단독작업 실시
- ④ 관리감독 소홀
- ⑤ 안전의식 결여

3. 예방대책

- ① 산소결핍장소 호흡용 보호구 착용
- ② 작업 전 질소가스 공급 차단
- ③ 단독작업 금지
- ④ 관리감독 철저
- ⑤ 안전의식 고취토록 체험교육 등 실시

4. 법 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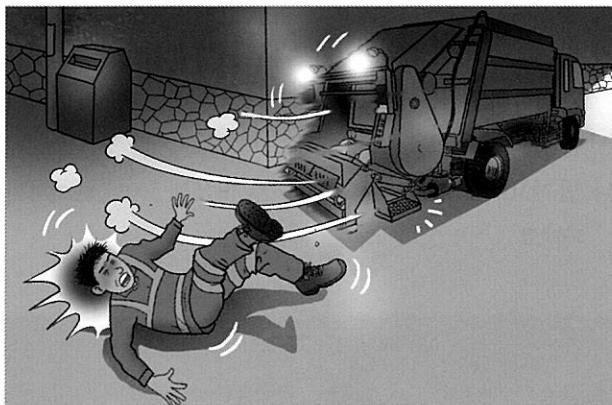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추락

| | | | | | | |
|-----|-------------|-------|-----|-------|----|-------|
| 업 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가 해 물 | 바 닥 | 피해 정도 | 인적 | 사망 1명 |
| 생산품 |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 재해유형 | 추락 | 물적 | - | |

1. 재해개요

비오는 날 새벽,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피재자는 쓰레기수거 압축차량이 오른편 뒤쪽에 매달려 다음 수거장소로 이동하던 중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높이 60cm 정도의 차량 발판에서 지면으로 추락하여 머리와 목 등에 상해를 입음.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였으나 10여일 후 사망함. 사고 당시 빗물에 차량 발판 및 차량 외관이 미끄러운 상태였음.



2. 재해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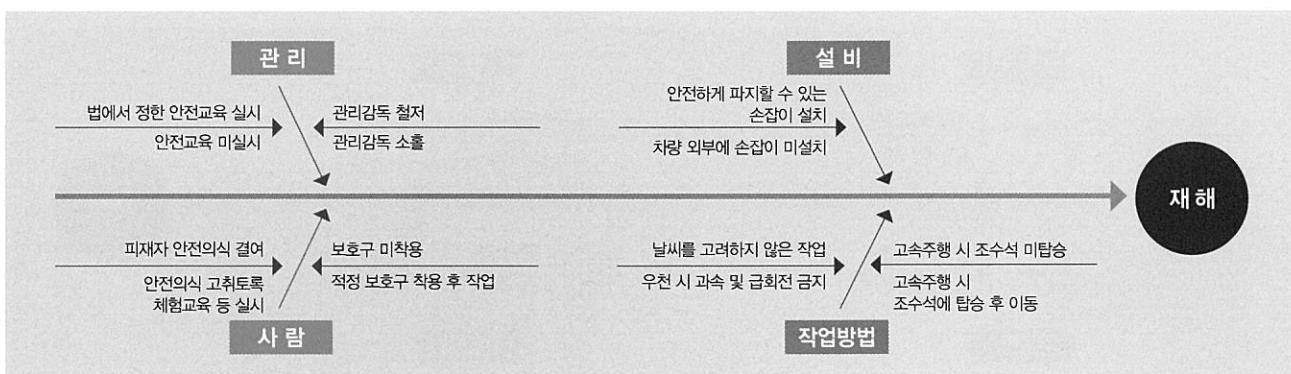
- ① 쓰레기 수거차량에 안전하게 파지할 수 있는 손잡이 등 미설치
- ②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 ③ 날씨를 고려하지 않은 차량 운행(급 좌회전)
- ④ 고속 주행 시 조수석에 미탑승
- ⑤ 안전교육 미실시
- ⑥ 관리감독 소홀

3. 예방대책

- ① 쓰레기 수거차량 외부에 안전하게 파지할 수 있는 손잡이 설치
- ②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후 작업
- ③ 날씨를 고려한 작업 및 차량 운행(과속 금지)
- ④ 고속 주행 시 조수석에 탑승 후 이동
- ⑤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실시
- ⑥ 관리감독자 관리감독 철저

4. 법 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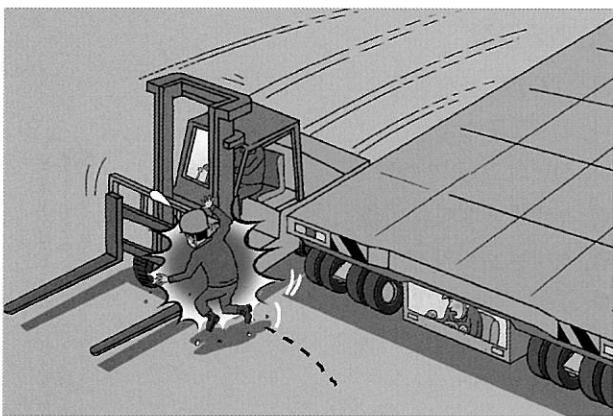


트랜스포터를 추월하는 지게차에 충돌

| | | | | | | |
|-----|-----------|------|-----|------|----|-------|
| 업종 | 선박건조 및 수리 | 가해물 | 지게차 | 피해정도 | 인적 | 사망 1명 |
| 생산품 | 선박용 블록 운반 | 재해유형 | 충돌 | | 물적 | - |

1. 재해개요

선박용 블록을 운반하는 트랜스포터가 느리게 운행하자 뒤따르던 지게차가 이를 추월하다가 트랜스포터 앞에서 신호하던 신호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호수와 충돌함. 지게차 운전자는 급정지 하였으나 넘어진 신호수의 흥부를 지게차가 이미 타고 넘어간 상태임. 신호수는 흥부압박에 의한 장기파열로 현장에서 사망함.



2. 재해원인

- ① 지게차의 과속 추월
- ② 시야 미확보 지역 지게차 과속 운행
- ③ 운행 중인 트랜스포터 주위 통제 미실시
- ④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의식 결여
- ⑤ 지게차 작업지휘자 또는 신호수 미배치
- ⑥ 관리감독 소홀

3. 예방대책

- ① 작업장 내 추월 금지
- ② 운행 방향에 대한 시야확보
- ③ 운행 중인 트랜스포터 주위 통제 철저
- ④ 안전교육 등 실시로 근로자를 안전의식 고취
- ⑤ 차량계하역기계 사용 시 각각의 신호수 배치
- ⑥ 작업장 관리감독 철저

4. 법 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